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0.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11월 14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11월 16일

라. 상정일자 :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2011.12.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정희)

가. 제안이유

-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사항 및 사용료 납부 / 반환규정에 대한 구체화, 명확화로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지역문화 예술인과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주민들의 온·오프라인 문화교류 창구인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개설에 따른 근거조항을 마련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민회관의 위치(도로명 주소) 변경(안 제2조)
 - 제물포길 213번지 → 국회대로 596번지
- 시설위탁 규정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준용사항 추가(안 제4조)

- 사용료 반환규정의 구체화(안 제12조)
-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카페활동 기여도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 마일리지 부여기준 추가(별표 제2호)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 에 따른 자구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개정 조례안은 구민회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개선하고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개설에 따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항에 구민회관의 위치를 변경된 도로명 주소에 따라 “체물포길 213번지” 에서 “국회대로 596번지” 로 변경
 - 안 제4조제5항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하도록 함.
 - 안 제12조제2항제1호에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부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까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15일 전에는 10분의 8을, 10일 전에는 10분의 6을, 5일 전에는 10분의 4를 각각 반환하도록 구체화 함.
 - 안 제16조의2에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카페활동 기여도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별표 2로 신설 함.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 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이 2011년 3/4분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이행결과 제출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경쟁제한

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민회관 시설의 관리 운영 조항에 시설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이 미비되어 있어 위탁 관련 조항에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음

- 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규정에 사용료 반환사유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반환하는 경우 반환범위를 전부 반환과 일부 반환으로 구분하고 사용료 전부 반환의 경우를 명시하고 일부 반환의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15일 전, 10일 전, 5일 전으로 나누고 반환 금액도 각각 80%, 60%, 40%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구민회관 시설 사용계약 체결시 반환하는 경우 반환 금액 및 반환 비율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한 적정한 개정임.
- 지역문화 예술인과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온·오프라인 문화 교류 창구인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가 개설됨에 따라 카페이용자의 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마일리지 사용용도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문화마니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90 호
----------	--------

제출연월일 : 2011.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사항 및 사용료 납부 / 반환규정에 대한 구체화, 명확화로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지역문화 예술인과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구민들의 온·오프라인 문화교류 창구인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개설에 따른 근거조항을 마련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민회관의 위치(도로명 주소) 변경(안 제2조)

- 제물포길 213번지 → 국회대로 596번지

나. 시설위탁 규정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준용사항 추가(안 제4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

다. 사용료 반환규정의 구체화(안 제12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전부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까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기 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반환

- 15일 전 : 10분의 8
- 10일 전 : 10분의 6
- 5일 전 : 10분의 4

라.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카페활동 기여도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근거 마련(안 제16조의 2)

○ 마일리지 사용 용도

- 아트홀 문화공연 관람
- 오프라인 회원모임 참여
-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의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것

마.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에 따른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나. 합 의 : 관련부서와 협의되었음
- 다. 부패유발요인 포함여부 : 검토필
- 라. 규제개혁대상 사무여부 : 심사필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물포길 213번지”를 “국회대로 596번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시설”이라 함은”을 ““문화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이라 함은”을 ““시설”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을 ““시설의 사용”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용료”란 제12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제7호 중 ““위탁”이라 함은”을 ““위탁”이란”으로, “사무중 일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를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운영함에 있어”를 “운영할 때”로 하고, “범위 안”을 “범위”로,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후단 중 “문화예술분야”를 “문화예술 분야”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함에 있어”를 “선정할 때”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운영함에 있어”를 “운영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함에 있어”를 “관리할 때”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할때”를 “해당할 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를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로, “정지될”을 “정지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삭 제〉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까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15일 전 : 10분의 8

나. 10일 전 : 10분의 6

다. 5일 전 : 10분의 4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100분의10범위 내”를 “100분의 10 범위”로 한다.

제 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 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6조의2(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아트홀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아트홀 홈페이지에 문화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극적인 구정 참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카페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 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부여할 수 있다.

1. 아트홀 문화공연 관람
2. 오프라인 회원모임 참여
3.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의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누적 마일리지 사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유효기간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트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무대예술 공연, 문화예술 행사 등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에 따라</u> ----- ----- ----- ----- ----- -----.</p>
<p>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제물포길 213번지</u>에 둔다.</p> <p>② (생략)</p>	<p>제2조(위치 및 명칭) ①----- ----- ----- ----- <u>국회대로 596번지</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문화시설”이라 함은 연주회, 무용,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문화강좌, 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p> <p>2. “시설”이라 함은 아트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p> <p>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영화상영 공연, 전람, 기타 행위를 말한다.</p> <p>4. “사용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p>	<p>제3조(정의)----- ----- <u>뜻은</u> -----.</p> <p>1. “문화시설”이란 ----- ----- -----.</p> <p>2. “시설”이란 ----- <u>그 밖에</u> ----- -----.</p> <p>3. “시설의 사용”이란 ----- ----- ----- <u>그 밖의</u> -----.</p> <p>4.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p>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라 함은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관람자”라 함은 유·무료관람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운영)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연, 전시, 문화강좌, 학술, 문화예술 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영등포구민을 타 시·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 가능하며,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

5. “사용료”란 제12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관람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위탁”이란 -----
-----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

-----.

제4조(시설의 관리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운영할 때 -----
----- 범위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 「문화 예술진흥법」 ----- 따라 -----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문화예술분야, 관계공무원, 기타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1. 2. (생략)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2.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

----- . -----
----- 문화예술 분야,
관계 공무원, 그 밖에 -----
----- .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
----- 선정할 때 -----

- 1. 2.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자의 의무) -----

----- .

- 1. ----- 운영할 때

----- .
- 2. ----- 관리할 때

----- .

3. ~ 5. (생략)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전부 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

3. ~ 5.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의 취소) -----

-----.

- 1.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

제9조(지도·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

-----.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10조에 따라 -----

-----.

② -----
----- 해당
할 때 -----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 정지되는 -----

2. <삭제>

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전부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달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반환

제14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15조(관람료 등) ① (생략)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무료관람권은 매 해당 공연마다 총 좌석의 100분의10범위 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6조(사용자의 설비) ① (생략)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대신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까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가. 15일 전 : 10분의 8
- 나. 10일 전 : 10분의 6
- 다. 5일 전 : 10분의 4

제14조(사용료의 감면)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제15조(관람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00분의 10 범위-----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자의 설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제16조의2(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아트홀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아트홀 홈페이지에 문화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극적인 구정 참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카페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 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부여할 수 있다.

1. 아트홀 문화공연 관람

2. 오프라인 회원모임 참여

3.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의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누적 마일리지 사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유효기간,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트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